

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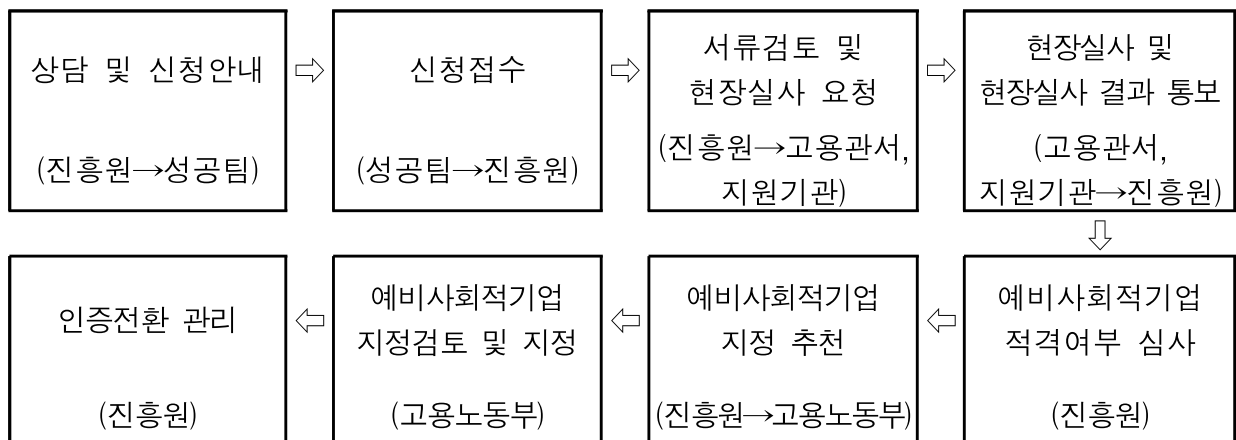
2021. 5. 18.

고용노동부 장관

I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

1. 지정 신청 및 심사

- 신청대상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'진흥원') 주관 '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'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(이하 '창업성공팀')
- 지정신청: 공고일~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접수
※ 마감일시는 진흥원을 통해 별도 안내
- 지정심사: 8월, 12월 예정 (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)
- 지정절차:



2.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

*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

① 조직형태

-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*

*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② 사회적목적 실현: 기타(창의·혁신)형
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,

-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 실현 적정 여부 등을 심사·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

③ 영업활동

○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(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)

-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
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
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(정관 등에 기재)
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3. 제출서류

-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신청서
 -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 - 창업지원기관 확인서
 -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)
 - 유급근로자명부(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)
 - 사업자등록증
 -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)
 - 정관·규약(공증)
 -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 * 「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」 상 구비서류 확인

4. 접수처 및 방법

- 접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- 접수방법: 서식별, 구비서류별로 PDF로(200dpi)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
 - * 세부 접수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
- 신청기간 : 공고일~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

5. 문의처
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
 - ☎ 031-697-7729, 7723,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연락처 붙임 참고
 - *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참고

2021년도 사회적기업 · 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

권역	기관명	주소	전화번호	팩스번호	이메일
강원	(사)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,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(우산동)	033-749-3942 033-749-3920	033-749-3900	gwse0524@naver.com
경기	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, 상가동 2층 (망포동, 수원영통행복주택)	070-4763-0130	070-4763-0120	pns@pns.or.kr
경남	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, 3층 (명서동, 일웅빌딩)	055-266-7970	0303-0945-7945	moducoop@moducoop.com
경북	(사)지역과소셜비즈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, 본부동 3층 301호(삼풍동, 경북테크노파크)	053-956-5002	053-267-5003	se@sebiz.or.kr
광주	사회적협동조합 살림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(치평동)	062-383-1136	062-384-1137	ses@socialcenter.kr
대구	(사)커뮤니티와경제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, 5층(동산동, 유창빌딩)	053-956-5001	053-217-5003	ucsr@hanmail.net
대전 세종	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, 3층(선화동)	042-223-9914	070-8787-7000	c-cmail@hanmail.net
		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-5(마드리드A) 509호	044-867-9954		
부산	(사)사회적기업연구원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(구서동, 현대빌딩2층)	051-517-0266	050-4926-0028	info@rise.or.kr
서울	(사)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호(충정로2가, 본관)	02-365-0330	02-365-0440	joyfulunion@naver.com
울산	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	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, 10층(달동, 울산극동방송)	052-267-6176	052-267-6177	ulsan@sescoop.or.kr
인천	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, 6층(주안동, 계림빌딩)	032-446-9492	032-421-9585	inseca@daum.net
전남	(사)상생나무	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, 3층(전문건설공제조합)	061-282-9588	0303-0955-9571	sstreetree@naver.com
전북	(사)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, 6층(팔복동1가, 경제통상진흥원)	063-213-2244	063-213-2245	jbse2019@gmail.com
제주	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, 1층(이도일동, 고용복지플러스센터)	064-726-4843	064-755-4843	jejusen2015@hanmail.net
충남	(사)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	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-3,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,4층	041-415-2012	041-415-2013	cnse1212@gmail.com
충북	(사)사람과경제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, 2층(송절동)	043-222-9001	043-223-9201	cbse@hanmail.net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6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

① 신청기관명 (사업자등록 기준)			
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(참여 년도)	② 대 표 자		
④ 연락처(휴대폰)	☎ (FAX.)	⑤ 사업자등록번호	
⑥ 소 재 지			
⑦ 조 직 형 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법상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민간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생활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·영어조합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·어업회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2.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으로 보는 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문화단체 등)		
⑧ 지정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㉗[], ㉘[], ㉙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		
⑨ 유급근로자 수			
⑩ 주된사업내용			
⑪ 업종	⑫ 소속위탁기관		
⑬ 사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·예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림 보전 및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사 간병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
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

구비서류	1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사업자등록증,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(해당 기업만) - 1)유급근로자명부, 2)4대보험가입자 명부, 3)근로자 근로계약서, 4)임금대장 4.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. 정관·규약(공중) 6.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7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. 대표자 이력서 9.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-----	---

❖ 작성방법

① 신청기관명

- 법인(단체)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

* 예시: 주식회사 홍길동 (사오정)

② 대표자명
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,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

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명(참여년도)

-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

④ 연락처

-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, “()”안에 대표자(또는 담당자)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

⑤ 사업자등록번호

-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
⑥ 소재지
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

⑦ 조직형태

-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(중복선택 불가)

⑧ 지정 유형

- “기타(창의.혁신)형”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(타 유형 선택 불가)

⑨ 유급근로자수(해당기업)

- 추천신청시점의 유급근로자수(고용보험가입자 기준)를 기재

⑩ 주된 사업내용

-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(소셜미션)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**간략히** 기재

⑪ 업종

- 사업자등록증 상 ‘업태’를 기재

⑫ 소속 위탁운영기관

-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

⑬ 사업분야

-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(중복선택 불가)

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
◆ 기업개요

기업명 (기관명)		대표자	
소재지			
연혁			

◆ 인증요건 충족계획

사회적목적유형 신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], ㉡[], ㉢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창의·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
조직형태	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계획(정규직 00명 등)
의사결정구조	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(운영위원회) 등 운영 계획
정규약관	정관(규약) 제·개정 계획 - 의사결정구조,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(개정) 계획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1. 사업 목적 (사업의 필요성)	1-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(소셜미션) :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(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) 1-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(사업필요성)
2. 사업 내용 (영업수입 확보방안)	2-1 구체적 사업내용 2-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-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-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-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<p>3. 사업 역량</p>	<p>3-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: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</p> <p>3-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: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</p> <p>3-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: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: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</p>
<p>4. 사업 목표</p>	<p>4-1 연차별 매출규모</p> <p>4-2 고용창출 계획</p> <p>4-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</p> <p>4-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</p>

◆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<p>1년차</p>	<p>(예시) - 사업장(사업시설) 확보 및 인력 확충</p>
<p>2년차</p>	<p>(예시) -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- 사업장(지점) 추가 확보 -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</p>
<p>3년차</p>	<p>(예시) -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</p>

◆ 기타 추진계획
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

*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(필요시 별지작성)